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실무자협의회 운영정책

제정 2018. 10. 01

개정 2019. 01. 01

**제1조(목적)**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협”이라 한다)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활성화 및 연구망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2조(역할)** ①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발전과 실무협의 효과적인 운영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KISTI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1. 실무협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의
2. 실무자협의회 워크숍 개최
3. 권역별 간담회 개최
4. 실무자협의회 운영회의 개최
5. 실무자협의회 워킹그룹 운영
6. 연구망 발전방향 및 연구망 운영에 대한 안건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기능
7. 기타 연구망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연구망의 활성화와 연구망 회원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기술의 발굴 및 정보교류를 통한 마인드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은 의장, 고문,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1. 의장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무협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KISTI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위원은 실무협 전임 의장 혹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위원 중 KISTI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단, 실무협 의장 및 실무협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하여 실무협에서 의결한 위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② 각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KISTI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연구망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자로 하며 위촉 기간 중 위원의 전직이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기관의 후임자를 위원으로 재위촉 한다.

제4조(간사) ① 간사는 실무협의 제반업무를 주관하며, KISTI에서 담당한다.

제5조(의결) 실무협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